

서울고등법원

제 5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7누408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1층(통인동) 대표자 정강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헌
피고, 피항소인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상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7099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16.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중 부속 명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다만,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중 부속 명세는 재무제표 중 부속 명세를 뜻하는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1, 3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당초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청구 부분 중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중 부속 명세, 계정별 원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2016. 5. 27."을 "2016. 5. 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3.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 정보의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만이 포함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을 뿐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별도의 부속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재무제표와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도 원고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여 위 부속 명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

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477조는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표제 하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위 서류들에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의 정의에 대하여 제1조의2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면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의미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부속 명세를 재무제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회계개념체계' 제1장 서론의 제8호는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재무제표의 범위에 부속 명세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부록의 실무지침 실2.1에서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세서와 경영진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전기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들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바뀌면서 위 규정들로

대체되었다).

3) 한편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듀21의 정관 제32조는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준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항), '회사는 완전한 회계장부 원본을 본점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2항), '사원은 통상적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제3항), '회사는 매년 회사의 회계서류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제33조는 "재무제표"라는 표제하에 작성하여야 할 서류들을 나열하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자본변동표를 명시하고 있는 사실, 외부감사인들이 에듀21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작성한 2008. 6. 30.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에듀21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개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 외에 피고가 부속 명세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정보 중 부속 명세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공개된 재무제표만으로는 프린티어관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거나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 등의 부속 명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만 주장할 뿐, 부속 명세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고, 달리 부속 명세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② 에듀21은 정관에 따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재무제표의 범위에 부속 명세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만 할 뿐, 반드시 부속 명세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에듀21은 정관에서 완전한 회계장부 원본을 작성·비치하여 사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이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에듀21이 대차대조표 등의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도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는 이를 제외하여 감사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에듀21이 정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서류가 전부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4. 이 사건 제2 정보 중 계정별 원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 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3쪽 제2행부터 제14쪽 제1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정보 중 계정별 원장의 일부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모든 계정별 원장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 공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달리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고, 기속사비를 얼마나 걷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에 비추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은 모두 에듀21의 영업상 비밀인 회계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계정별 원장 중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정한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중 부속 명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 중 계정별 원장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부속 명세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조해현 

판사 왕정옥 왕정옥 

판사 송혜정 송혜정 

별지

목 록

1. 프런티어관 설립과 관련된 실행예산
2.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 및 계정별 원장(일자, 거래처, 금액, 내역 등이 기재)
3. 고려대학교의 프런티어관 운영계획서와 그 첨부문서
4. 프런티어관의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끝.

정본입니다.

2017. 9. 1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오주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